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 2021 - 184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11. 19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1. 도로명주소 부여현황

연번	종전주소(지번)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자양동 227-275	자양번영로9길 11	2010-06-03	자양번영로에서 분기되는 도로	

○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: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물신축으로 소유자 신청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

2. 도로명주소 부여일(효력 발생일) : 2021. 11. 19.

3.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이후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위의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4. 참고사항

- 건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는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, 훼손 또는 망실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합니다.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(http://www.gwangjin.go.kr)를 참고하시거나 부동산정보과(☎ 02)450-775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